의 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제 254 호		
건 명	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		
제안(출)자	서초구청장	제안(출)년월일	2002. 5. 2.
검토위원명	전문위원 김 재 근		

1. 검토내용

가. 제안이유

최근 시중금리의 하향 및 저금리 추세 등으로 저이율의 기금지원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시킨다는 본래의 기금설립 취지와는 차이가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시가스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(1) 융자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 (안 제6조)

(2)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 (안 제7조)

2. 검토결과

□ 본 개정조례안은

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에 대한 범위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□ 주요내용은

o 융자범위는 "사용시설비 및 공급시설비의 70%이내 융자"를 "규칙으로 정하도록" 함. (안 제6조)

o 융자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"사용시설자금 : 연리 8% (3년 균등분할 상환), 공급시설자금 : 연리 8% (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)"을 "규칙으로 정하도록" 함. (안 제7조)

o 경과 규정으로 "이미 융자된 기금에 대한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규칙에 따르도록" 함. (안 부칙 제2조)

□ 검토의견

o 본 개정안은 도시가스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 저금리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융자범위 및 융자이자율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o 2002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계획(2002 예산안 첨부자료)에 의하면 2001년도말 기금현재액은 100,985천원이며, 2002년 융자계획은 28,800천원임.

o 2001년도 융자실적은 1가구 343만원이며, 2002년도(5월 3일 현재)는 융자실적이 없음.

o 위 내용을 검토한 바,

- 융자금액이 소액이며, 융자신청이 극히 저조하여 향후 조례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겠으나, 현재 융자이용자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한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